

제230회 정례회

2004. 7. 16(금)

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

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I.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내역

200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50억 4,769만 7천원이며, 지출결정액은 144억 7,164만 7천원으로 “호우 및 태풍피해복구 등 16건에 113억 7,405만원을 지출하고 29억 3,879만 3천원은 이월 하였으며 1억 5,880만 3천원은 불용액 이며

예비비 지출 16건에 대한 내역은 아래와 같음.

(단위 : 원)

구분	지출결정액	지출액	이월액	불용액	지출사유(지출일자)
총계	14,471,647,000	11,374,050,770	2,938,793,000	158,803,230	
본청	14,471,647,000	11,374,050,770	2,938,793,000	158,803,230	
1	96,300,000	96,300,000	0	0	바이오산업추진단개소경비(03.2)
2	1,125,740,000	995,873,030	0	129,722,970	청남대개방관련사업(03.4~5)
3	70,500,000	60,504,010	0	9,995,990	2차 //
4	18,400,000	18,355,000	0	45,000	여름철수난사고다발지역안전시설설치(03.8)
5	2,848,000	2,848,000	0	0	우박피해(5.22)복구도비부담금(03.8)
6	5,941,910,000	5,468,531,000	472,896,000	483,000	7월호우피해복구부담금(03.9~12)
7	1,500,000	1,500,000	0	0	8월수해복구주택복구부담금(03.9)
8	23,490,000	23,490,000	0	0	9월태풍「매미」주택복구비(03.10)
9	20,556,000	6,458,000	0	13,781,000	음성도의원보궐선거소요경비(03.11)
10	114,428,000	114,428,000	0	0	9월태풍매미피해복구비(03.11)
11	52,700,000	52,669,500	0	500	교통사고도로관리책임손해배상금(03.10)
12	508,060,000	507,053,660	0	1,006,340	붕급조정수당소요경비(03.11)
13	2,161,000	2,160,490	0	510	교통사고도로관리책임손해배상금(03.11)
14	6,241,594,000	3,775,717,000	2,465,877,000	0	태풍매미피해복구부담금(03.11)
15	174,985,000	171,714,080	0	3,270,920	조류독감긴급방역약품비(03.12)
16	76,475,000	76,475,000	0	0	하반기명예퇴직수당(03.12)

II.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내역

2003년도 충청북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충북과학대학운영 특별회계의 예비비예산액은 4,077만 1천원 중 인건비·수당 부족에 따른 추가경비 2,356만 9천원을 지출결정하여 2,299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57만 7천원은 불용액 임.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지출결정액	지 출 액	이 월 액	불 용 액	지 출 사 유
1	23,569	22,992	0	577	인건비·수당 부족분

III. 검토의견

- 예비비 지출제도는 재난, 재해등으로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발생시 재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「의회의 예산 사전심의제도」의 예외이므로 사업예산을 편성 의회의 심의를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출금액이 결정되고 집행한 사업은 조속히 완료하여야 함에도
- 집행부에서 2003 회계연도에 지출결정한 예비비 집행사업 17건중 (일반회계 16건 특별회계 1건)
 - 여름철 수난사고방지대책사업비
 - 도본청 및 충북과학대의 인건비·수당 부족분 등은 「사전예측이 가능한 사업」으로 정상적으로 예산에 계상 의회의 승인을 받아

있으므로 향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으며

- 예비비 지출사업은 긴급한 경우에 허용한 것이므로 사업기간을 최대한 앞 당겨야 만이 예비비 지출제도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나 예비비 지출사업을 다음연도로 이월 추진하는것은 향후 시정되어야 하며
- 도의원 보궐선거소요경비 중 기타부담금 1,378만원을 지출결정하고 전액 불용처리하는 사례도 시정되어야 할 것임